

#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 A. 현 회장
  - B. 현 차기회장
  - C. 2년 이내 전 회장 2인
  - D. 춘·추계 조직위원장 2인
  - E. 편집위원장 2인
  - F. 각 지회 지회장이 2인씩 추천한 6인
  - G. 회장이 추천하는 연구회 위원장 중 2인
2.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는 자체 운영규정 및 관행에 따라 운영되며, 2명 이상의 차차기회장 후보와 차기 감사 후보를 본인의 승낙을 득하여 선정하고 현 회장단에 추천한다.

##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에는 차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 (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총무부회장이 담당한다.

## 제4조 (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2. 차차기회장 후보가 요청하는 경우 후보가 추천한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 (선거인 자격 및 명부)

1. 본 회의 종신회원으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의 학회 활동 기간을 거친 후에 투표권을 부여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매년 선거 실시 2개월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전 회원에게 공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선거인명부 확정은 투표개시 1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조 (선거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임기 시작 3개월 이전까지 차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 공고에는 선거 일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 (추천위원회의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

1. 추천위원회 회의 전에 각 추천위원은 반드시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 편집위원장이 추천위원은 사전에 편집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야 함).

2. 추천위원회 회의는 추천위원회 총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3.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주재 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보군을 정한다.
4. 후보군내 각 후보에 대하여 출석 추천위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보를 모두 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 제8조 (차차기회장 후보 등록)

1.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는 차차기회장 출마소견서 등을 갖추어, 차기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5개 대학 이상의 종신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는 추천 연명서, 차차기회장 출마소견서 등을 갖추어, 차기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된 후보가 없을 경우,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후보를 다시 추천한다.

#### 제9조 (선거에 의한 차차기회장 선출)

1. 차차기회장 등록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종신회원들의 무기명 찬반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 방식은 신뢰성이 있는 통신방식을 사용한다.
2. 차차기회장 등록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종신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 방식은 신뢰성이 있는 통신방식을 사용한다.
3. 차차기회장 당선자는 최다 득표한 자로 하며, 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찬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당선된 것으로 한다.

#### 제10조 (선거 결과 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선거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한 후, 개표 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및 개표 결과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그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5]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8.04]
1. 이 규정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6.15]
1. 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6.30]
1. 이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8.30]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13]
1.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30]
1. 이 규정은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